

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이 재 명 인

2026년 2월 19일

국 무 총 리 김 민 석

국 무 위 원
고 용 노 동 부 장 김 영 훈

● 법률 제21374호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중 “「근로기준법」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”을 “「근로기준법」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(이하 “근로감독관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안전보건 현황 공시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.

1. 안전보건관리체제
2. 산업재해 발생 현황
3.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,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계획
4.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
5.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
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현황에 관한 공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(이하 “명예산업안전감독관”이라 한다)에”를 “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”로 한다.

② 근로자대표는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(이하 이 조에서 “명예산업안전감독관”이라 한다)을 추천할 수 있다.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.

③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36조제1항 중 “부상”을 “사망, 부상”으로, “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”를 “수준인지를 결정하고”로, “결과에 따라”를 “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”로, “하여야 하며,”를 “포함하여”로, “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”를 “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(이하 “위험성평가”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에 따른 평가”를 “위험성평가”로, “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”을 “고

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”으로, “해당 작업장의”를 “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”을 “위험성평가의 결과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제1항에 따른 평가의”를 “위험성평가의”로, “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”를 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”로 한다.

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.

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, 설명회, 사업장 게시,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·위험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9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제56조의 제목 중 “중대재해”를 “중대재해등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중대재해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(이하 “중대재해등”이라 한다)”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중대재해가”를 “중대재해등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중대재해”를 “중대재해등의”로, “제1항에”를 “제1항 및 제2항에”로, “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”을 “원인조사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중대재해가”를 “중대재해등이”로 한다.

1. 중대재해

2. 화재·폭발,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(중대재해는 제외한다)가 발생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인조사 시에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의 규명을 위하여 공단 또는 해당 재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(이하 “관계전문가”라 한다)에게 재해 원인조사를 별도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중대재해등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해당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관계자 면담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.



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6조의2(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·공개) ①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제56조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대재해등의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보고서(이하 이 조에서 “재해조사보고서”라 한다)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동종·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재해조사보고서를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공개한다. 다만,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는 경우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

항제2호,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- ④ 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 내용, 제2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의 공개 방법·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1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근로기준법」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(이하 “근로감독관”이라 한다)은”을 “근로감독관은”으로 한다.

제16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하는 자

제1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2조의2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제56조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는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제166조의2 전단 중 “제51조부터 제57조까지”를 “제51조부터 제56조까지, 제56조의2, 제57조”로 한다.

제170조제2호 중 “제56조제3항”을 “제56조제5항”으로, “중대재해”를 “중대재해등의”로, “고용노동부장관의”를 “고용노동부장관,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”로 한다.

제175조제4항에 제1호의2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“제37조제1항”을 “제36조제2항·제3항, 같은 조 제4항 전단, 제37조제1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

2의2.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

2의2. 제36조제5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·보존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0조의2, 제23조 및 제175조제4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, 제175조제4항제2호의2,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.

1.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(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): 2027년 1월 1일
2.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(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장): 2028년 1월 1일

제2조(위험성평가에 관한 적용례)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) ① 제56조(제1항제2호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) 및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부터 적용한다.

- ② 제49조 및 제5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한다.

◇개정이유

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,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현장에서 이행력을 제고하며, 재해조사를 보다 폭넓게 실시하고, 재해조사와 관련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, 기업 등에 안전보건공시 의무를 부과하여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.

◇주요내용

- 가.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함(제10조의2 신설).
- 나.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함(제23조제2항 신설).
- 다.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,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교육, 설명회, 사업장 게시,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리도록 하며,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(제36조제3항·제4항 및 제175조제4항제2호의2 신설).
- 라. 재해 원인조사의 대상에 화재·폭발, 붕괴 등으로 발생한 일정 요건의 산업재해를 추가하고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별도 원인조사 실시의 근거와 별도 원인조사를 위한 사업장 출입, 관계자 면담, 자료 제출 등 조사 권한의 근거를 마련함(제56조제1항제2호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).
- 마.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별도 원인조사에 대한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, 해당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함(제56조의2 신설).

<법제처 제공>

